

하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3288
----------	------

제출연월일 : 2026. 7.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기후변화로 인해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돌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방제사업을 통합 관리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근거하여 병해충 예찰 및 신속한 방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나.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다.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운영 근거 마련(안 제8조)
라.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9조)

3. 제정안: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5. 예산수반 사항: 덧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 기간: 2026. 4. 27.~2026. 5. 18.(21일간)

나. 의견 내용: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원안동의

9. 참고사항 : 덧붙임

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사업추진 및 제도 현황

10. 관련부서: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하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를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 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해충의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시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하여 하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5조(기능)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방제단과의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사업추진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 교육 및 홍보
6.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및 의뢰
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제6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과 단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예찰·방제단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담당 과장
2.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담당 팀장
3.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담당자
4.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 결과를 중앙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방제단과 공유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방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로 한다.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식품위생농업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식품위생농업과장 나 회 숙
	팀장 직위·성명	도시농업팀장 계 태 경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안 다 연 (031-790-5039)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하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8조, 제9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따른 인력 활용 및 방제 추진 시 소요되는 경비 등

2.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 규정

-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관내 농경지 병해충의 효율적인 예찰·방제를 위하여 기존에 시행 중인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확보된 인력 및 방제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어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신규 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전문인력 활용 및 예산지원 관련 규정은 병해충 발생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임의 규정으로,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발생 빈도 및 사업 규모 등을 확정하기 어려워 기술적인 비용 산출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안전환경국 식품위생농업과장(나희숙)

관계법령 발췌서

1

「식물방역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4., 2011. 7. 14., 2013. 3. 23., 2016. 12. 2.>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진균(真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식물검역대상물품”이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이하 “흙”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규제병해충”이란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검역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을 말한다.

5. “검역병해충”이란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아니한 병해충

나.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發生豫察)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

6. “규제비검역병해충”이란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栽植用) 식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잠정규제병해충”이란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7의2.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이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 중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검역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목재가구·폐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8. “분포조사”란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가. 병해충의 분포지역에 대한 조사활동

나. 병해충의 발생밀도 및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활동

9. “역학조사”란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병해충의 감염원 추적을 위한 활동

나. 병해충의 유입경로 규명을 위한 활동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①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 및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병해충(「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은 제외한다)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

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둔다.** 이 경우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2025. 1. 31.>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과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2

「식물방역법 시행령」

[시행 2025. 9. 19.] [법률 제35731호, 2025. 9. 2., 일부개정]

제3조의3(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이하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 1명과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한 부분부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 3. 23.>

②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분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③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수립
2. 병해충예찰·방제단의 지원
3.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의 총괄·조정
4.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5. 병해충 예찰·방제와 관련된 대 국민 홍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 13.]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19. 6. 25.>]

제3조의4(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촌진흥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단장은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위하여 기술정보, 식량작물, 원예작물 등 부문별로 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12. 28.>

1.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의 예산·기술 지원
4. 지방자치단체와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5. 병해충 예찰·방제와 관련된 농가 교육 및 홍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13.]

[제3조의3에서 이동 <2019. 6. 25.>]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 추진 및 제도 현황

<표1>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추진현황(최근 3개년)

사 업 명	연 도	사업비 (천원)	지원농가 (호)	대상면적 (ha)	비고
과수화상병 방제약 지원	2024	2,800	9	6.4 ha	국도비사업
	2025	5,100	13	6.5 ha	
	2026	3,600	13	6.5 ha	
벼 병해충 방제약 지원	2024	900	4	2.7 ha	자체사업
	2025	1,200	4	2.5 ha	
	2026	1,200	6	2.2 ha	

<표2>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자체	조례명	제정연월	비고
1	경기도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016. 6. 제정	
2	용인시	용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020. 5. 제정	
3	고양시	고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020. 1. 제정	
4	성남시	성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024. 12. 제정	
5	구리시	구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021. 4. 제정	

※ 경기도 31개 시·군 중 17개 시·군에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